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4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송옥주 · 임미애 · 윤준병
임호선 · 이병진 · 황명선
전종덕 · 김현정 · 이원택
문금주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식수산물”을 “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식수산물 및”을 “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 및”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마을어업수산물 및 마을어업시설물

제7조 중 “양식수산업”을 “양식수산업 또는 마을어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를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

2. 법인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u>양식수산물</u> ,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u>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어업재해”라 한다)와 <u>양식수산물</u>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u> ----- ----- ----- -----.

2. ~ 6. (생략)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 3. (생략)

<신설>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
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

제5조(보험목적물)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② (생 략)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u>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u>,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마을어업수산물 및 마을어업 시설물</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가입자) ----- ----- -----<u>양식수산업 또는 마을어업-----</u>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 1. <u>개인</u> 2. <u>법인</u>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u>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u>
--	---